

##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에 관한 일반 규정

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전학이념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는 대학 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라 함은 대학의 전학이념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 구조 및 역량을 집중화하고 전문화한 상태를 말한다.
2. "대학발전계획"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전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세부 실행 계획, 예산을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대학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 계획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대학 발전 및 특성화는 대학의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수립하되, 필요시 내,외부 자문위원을 초빙 할 수 있다.
- ③ 대학 발전 및 특성화의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다.
  1. 대학 내부 환경 분석: 비전 및 발전전략 체계 진단, 목표 및 성과 진단, 내부 역량 및 재정 진단
  2. 대학 외부 환경 분석: 거시, 인구 분석, 산업환경 분석, 국가 정책 분석
  3. 종합 진단 및 아젠다 도출
  4. 특성화 전략 수립: 미래 대응 특성화 전략 수립, 목표 및 핵심 과제 도출, 역량 강화 방안, 평가 방안
  5. 특성화 계획 수립: 세부 실행 방안 수립

④ 대학발전 및 특성화 계획은 기획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운영)** ① 대학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② 대학 행정본부 및 스쿨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계획을 성실히 운영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대학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 운영 평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학 발전 및 특성화는 대학의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평가하되, 필요시 내,외부 평가위원을 초빙 할 수 있다.
- ③ 대학 발전 및 특성화 계획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및 학칙 제16장에 의거한 대학 자체평가 결과
  2. 성과지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등록률, 취업률 외

3. 대학 구성원 및 관계자 대상 각종 만족도 조사

④ 평가 결과는 차기 대학 발전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반영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제 규정 및 각종 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